

## 6 기획

# 청소노동자 논란, 우리학교 “좋아지고 있다”

이진구 기자 ik6348@khu.ac.kr

최근 여러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연세대학교(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우리신문은 우리학교 청소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학내 청소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되짚어봤다.

### 연세대 비롯한 대학가 청소노동자 집회 계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는 지난 4월부터 연세대 학생 회관 앞에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연세대 학생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약 64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논란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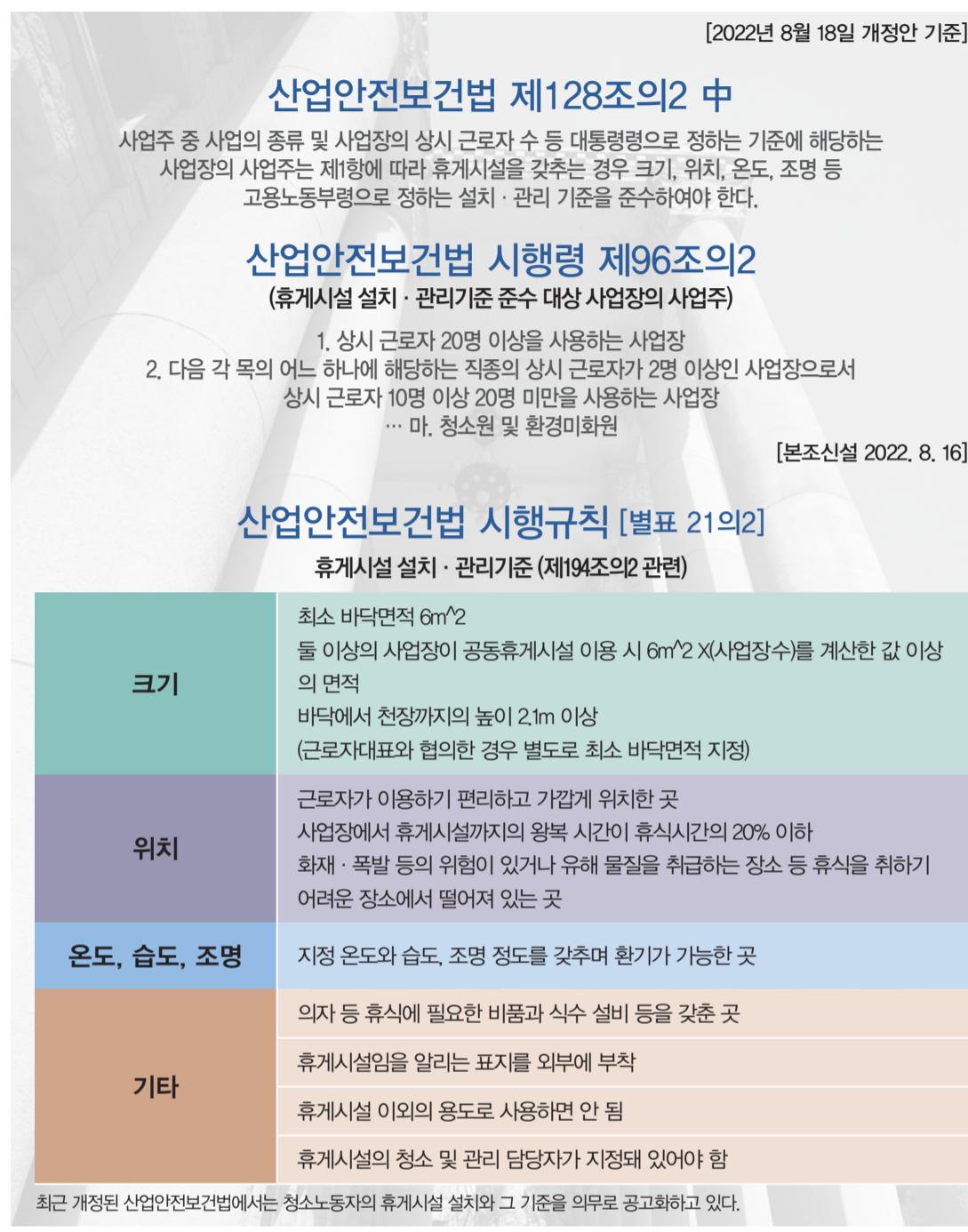
연세대 외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내 13개 대학 등 사업장은 지난 3월 말부터 학내 집회와 시위를 이어왔다. 그중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시급 40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했고,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770원 인상을 요구했다.

### 고용 구조로 인해 발생한 학교-노동자 의견차

학내 청소노동자 문제의 쟁점은 청소노동자가 학교가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형태라는 데 있다. 간접고용이란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다.

실제로 이번 논란에서 연세대 측은 “용역업체와 노조 간 문제다”며 선을 그었다. 청소노동자 측은 “용역업체가 사업 운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정인 학교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의 간접고용은 대부분 ▲인건비 절감 ▲법적 사용자책임 회피 ▲경영 효율화 등 사용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행해진다. 이러한 목적은 노동자 처우를 열악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그 기준을 의무로 공고화하고 있다.

**[2022년 8월 18일 개정안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中**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본조신설 2022. 8.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제194조의2 관련))

크기	최소 바닥면적 $6m^2$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 이용 시 $6m^2 \times (\text{사업장수})$ 를 계산한 값 이상의 면적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m 이상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경우 별도로 최소 바닥면적 지정)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깝게 위치한 곳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시간이 휴식시간의 20% 이하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곳
온도, 습도, 조명	지정 온도와 습도, 조명 정도를 갖추며 환기가 가능한 곳
기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식수 설비 등을 갖춘 곳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휴게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됨 휴게시설의 청소 및 관리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함

하게 만든다. 특히 연세대 청소노동자 측의 주장과 같이 노무공급사업주인 용역업체가 지불 능력 측면 등에서 독립성이 없다면, 사용자인 학교가 지급하는 용역단가와 파견비 등의 도급비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우리학교  
간접고용과 직고용 공존**

우리학교는 지난 2017년 국내 대학 최초로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직접고용을 실현한 바 있다. 직접고용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스페이스21 직원 휴게실 모습**  
(사진=박소은 기자)

용 전환에 찬성하는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200여 명을 자회사 ‘케이에코텍’을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청소노동자는 지난 2019년 7월 케이에코텍과의 계약이 만료돼, 이전 용역업체였던 ‘C&S’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관련 기사 : 용역으로 돌아가는 일부 청소노동자… 학교 측 “노동자 정규직화가 최종 목표”/대학주보 제1657호 (2020.04.13.)) 현재 국제캠퍼스 청소노동자 102명 전원은 학교 소속이며,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소노동자 197명 중 109명은 학교 소속, 88명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우리학교 청소노동자  
처우 수준 대체로 긍정적**

실제로 우리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처우 수준에 대해 “(다른 학교에 비해) 나쁘지 않다”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

**휴게실 개선점 여전히 존재**

그러나 학내 청소노동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생과대

청소노동자 C 씨는 “휴게실이 협소해 아쉽다”고 털어놨다. 또 경영대 청소노동자 B 씨는 “휴게실의 위치가 계단 밑에 위치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르면, 직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직원 10명 이상인 사업장 중 경비와 청소 등의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휴게실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더해 산안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산업체 해 예방의무를 규정해 원청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산안법은 휴게실의 기준을 ▲면적  $6m^2$  이상 ▲높이 2.1m 이상 ▲여닫을 실내 온도 28도 이하 ▲겨울 실내온도 18도 이상 ▲습도 50~55% ▲환기 가능 ▲위험과 소음 지점에서 떨어진 곳으로 정했다. 위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면적 기준이 인당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을 명시하고 있어 노동자 수와 관계없는 면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에 서울캠 총무팀은 “우리학교에 설치된 휴게실 전체가 휴게실 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지하 또는 계단 밑에 위치한 휴게실의 경우 높이 기준을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물이 산에 위치해 건물의 층 수 표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지상과 지하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휴게실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서울캠 총무팀은 “최근 학생회관과 푸른솔문화관에 있는 휴게실 일부를 지하나 계단 밑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스페이스21 휴게 공간 또한 다른 위치로 이동해 환기창을 설치한 바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내 휴게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내 공간 조정은 건물별 관리주체부서와 호실별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면서도, “이번 취재를 통해 산안법이 개정됐음을 인지했으며, 권고 수준에 그쳤던 휴게실 기준이 의무 사항으로 바뀐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구성원들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표했다.